



제 394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 · 과학 훈련지원〉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239호)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335호)

2022.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천 우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4

I. 제안경위

[배현진의원안]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11. 10.

다. 회 부 일 : 2021. 11. 11.

[임오경의원안]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11. 16.

다. 회 부 일 : 2021.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현진의원안]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 스포츠 역학, 스포츠심리, 동작 및 기술 분석, 스포츠영양, 스포츠의학,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하여 국가대표 종합관리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 진찰, 치료, 재활,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효과적인 훈련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3조 및 제34조).

[임오경의원안]

최근 체육계에서는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선수생명의 증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음.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6차 권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

가대표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진적인 기술과 훈련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 기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관리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내용에는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또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양성과 경기력 향상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적 훈련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제36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두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배현진의원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 과학 훈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오경의원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 체육과학 훈련 연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활체육과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및 체육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현행	배현진의원안	임오경의원안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5의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 ----- ----- ----- ----- ----- 1.~ 5의5. (현행과 같음) 5의6. <u>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u> 6. (현행과 같음)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 ----- ----- ----- ----- ----- 1.~ 5의5. (현행과 같음) 6. <u>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 -----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 ----- -----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u>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u>	6. <u>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 ----- ----- ----- ----- ----- -----

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3. (생략) <u>4. 체육 과학의 연구</u> 5. (생략) ② ~ ⑤ (생략)	----- -----. 1.~ 3. (현행과 같음) <u>4.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 정책의 연구</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 3. (현행과 같음) <u>4.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 정책의 연구</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및 의료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¹⁾ 스포츠 과학훈련지원 및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²⁾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수행하고 있음.

1) 2021년 기준 진천/태백/태릉선수촌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312억원 기금 보조, 국가대표 의료지원(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학과, 건강검진 등)에 약 25억원(의료인력 20여명 인건비, 메디컬센터 운영비 등) 기금 보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이하 생략)

두 개정안은 모두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지원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두고자 하는데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그 외에 배현진 의원안은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두는 것을 규정하는데, 임오경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서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및 체육 정책 연구를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차이점을 두고 있음.

먼저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과학적 훈련지원은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훈련의 보조수단임.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개별 선수에 대한 관리(식사, 수면, 심리 등)가 요구되며 따라서 과학적 훈련지원 또한 선수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³⁾ 이를 통해 개인 특성별 맞춤형 과학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훈련의 효과성 향상, 개인의 경기력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행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국가대표선수촌 관리와 과학적 지원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의 현장 접목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현장에서의 전문체육에 대한 훈련 지원 보

3) ‘스페셜케어(세계정상급 선수 특별 집중 지원)’, ‘울케어(훈련 형태 변화에 맞춘 선수단 전원에 대한 심리, 영양, 부상 케어 지원)’ 등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양(식단관리)·심리·재활은 대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음.

다는 스포츠AI센터⁴⁾ 운영과 같이 스포츠데이터 관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데이터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스포츠 경쟁력은 데이터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다음으로 국가대표선수촌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무적으로 국가대표선수촌(진천·태릉⁵⁾·태백선수촌과 이천선수촌)을 운영하고 있음. 배현진 의원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선수촌 관리를 법상 명문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선수촌 관리 및 관련 예산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안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서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및 체육 정책 연구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연구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관·조직·예산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통합)대한체육회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근거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4) 스포츠AI센터는 22년도 예산안에 신청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국민체육공단은 그 대신 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임.

5) 1966년에 대한체육회가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서 특정 분야(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연구기능만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 분야의 단절을 초래하고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서 기술한 스포츠AI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프로스포츠연맹 등) 데이터를 포함한 각 분야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의 스포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⁶⁾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 기능을 체육과학의 연구에서 정부 스포츠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제반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원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및 예산 중복 집행에 따른 비효율 발생, 전문체육-지방체육-생활체육 간 스포츠과학 지원 연계성 단절, 비연구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미흡한 연구역량⁷⁾에 따른 우리나라 스포츠과학 역량 대폭 후퇴가 우려되는 바, 스포츠 분야별로 연구기능을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훈련 효과 및 관리의

6)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내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기존의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7) 다만, 대한체육회는 연세대 IOC연구소와 스포츠 상해 예방 연구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경기력 분석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제1항12호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의 신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41년 간 대한민국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별개로 선수촌 관리기관에 해당 기능을 분산 시, 인력 및 예산의 중복지원, 대한민국 스포츠과학 수준 발전에 역행의 위험이 있고,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방체육의 연구·지원 연속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중심의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체계를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